의안번호	제 106 호
의 결 연 월 일	2007년 4월 일 (제 회)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07년 4월 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 안 번 호	106

제출연월일 : 2007년 4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생활체육 및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충북체육 발전과 스포츠 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현재의 충청북도 체육회관 증축과

○ 한방과 양방의 협진체제를 구축하여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주의료원 한방진료부 및 건강관리센터를 신축하며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 관련 대기업 투자유치를 위하여 취득하려던 (주)삼익 소유의 공장부지 매입계획을 유치대상 기업에서 직접 매입함에 따라 취득계획을 취소하려는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 충청북도 체육회관 증축 ≫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38-7번지외 1필지
○ 사업규모 : 1,468㎡(445평) - 증축(수직 3층→ 5층)
○ 사업기간 : 2007.4～12(9개월간)
○ 사 업 비 : 1,500백만원

≪ 청주의료원 한방진료부 및 건강검진센터 신축 ≫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554-6번지(환자쉼터 녹지공간)
○ 사업규모 : 지하1・지상 3층 2,676㎡(809평)
○ 사업기간 : 2007. 5～2008. 10(2년간)
○ 사 업 비 : 5,031백만원(국비 1,311 도비 2,489 의료원 1,231)

≪ 대규모 기업 투자유치용 공장부지 매입계획 취소 ≫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55번지 일원
○ 매입규모 : 2필지 108,697㎡(32,880평)
-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55번지, 공장용지, 98,905㎡
-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313번지, 공장용지, 9,792㎡
○ 사업기간 : 2007. 3 ~ 4(2개월)
○ 사 업 비 : 33,000백만원(도비 16,500　청주시비 16,500)

3. 예산상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재산취득	재산처분	교환취득	교환처분
계	6,531,000	-	-	-
○ 충청북도 체육회관 증축	1,500,000	-	-	-
○ 청주의료원 한방진료부 및 건강검진센터 신축	5,031,000	-	-	-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서 : 별첨

5. 관계법령 : 별 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07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

(단위 : 천원)

구분			당초			변경(수정)			합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2	64,348.5㎡ (19,465 평)	18,000,000	△1	△54,348.5㎡ △(16,440 평)	16,500,000	1	10,000.0㎡ (3,025 평)	1,500,000
		건물	2	5,850.0㎡ (1,769 평)	13,000,000	2	4,144.0㎡ (1,254 평)	6,531,000	4	9,994.0㎡ (3,023 평)	19,531,000
		기타									
	매입	토지	2	64,348.5㎡ (19,465 평)	18,000,000	△1	△54,348.5㎡ △(16,440 평)	16,500,000	1	10,000.0㎡ (3,025 평)	1,500,000
		건물									
		기타									
	교환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2	5,850.0㎡ (1,769 평)	13,000,000	2	4,144.0㎡ (1,254 평)	6,531,000	4	9,994.0㎡ (3,023 평)	19,531,000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매각	토지									
		건물									
		기타									
	교환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200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

(단위:㎡,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추정가액(천원)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주소,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계	토지	1 건	△54,348.5	△16,500,000				
	건물	2 건	4,144.0	6,531,000				
	기타							
1	토지							
	건물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38-7번지외 1필지	1,468.0	1,500,000	2007.4-12	충청북도 체육회관 증축	증 축	
	기타							
2	토지							
	건물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554-6번지	2,676.0	5,031,000	2007. 5 ~ 2008.12	한방진료부 및 건강검진센터 신축	신 축	
	기타							
3	토지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55번지외 1필지	△54,348.5	△16,500,000	2007.3-4	반도체 관련기업 대규모 투자유치	(주)삼익	계획취소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관 계 법 령 발 췌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